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박수연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2530호
시행일자 2018. 5. 29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참 조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96호(2018.5.28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79호, 2018.4.2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[주요내용]
○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신설 (별지 1)
* (주요내용) 마비렛정(C형간염 치료제) 등
○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변경 (별지 2~4)
○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별표1 중 삭제 (별지 5~6)

[시행일]
○ 별지1, 별지2, 별지5 및 별지6 : 2018년 6월 1일
*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
○ 별지3 : 2018년 6월 25일
○ 별지4 : 2019년 5월 1일

붙임 : 개정 고시문 및 별표1 개정안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